

국토교통 분야 국제감축사업 사업자를 위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2부

2024.02.15



KRIC

한국기후변화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국토교통 분야 국제감축사업 사업자를 위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2부

Contents

- CHAPTER 01 3. 시공 및 설치운영
- CHAPTER 02 4. 감축실적 발행
- CHAPTER 03 5. 감축실적 이전 및 활용
- CHAPTER 04 부록

사업자를 위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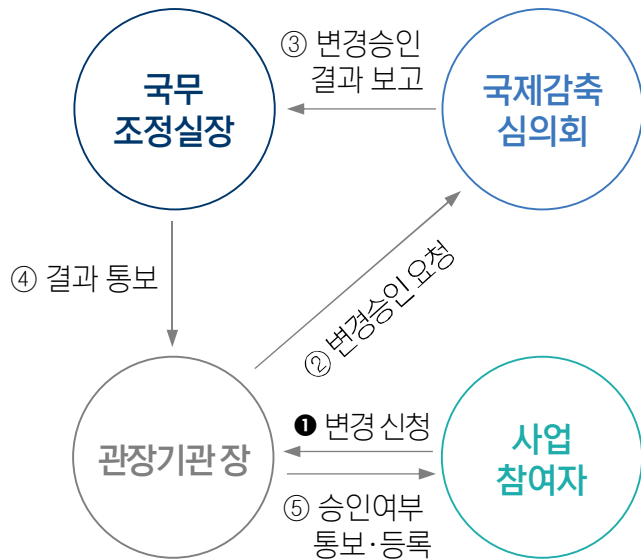
제1장

3. 시공 및 설치운영

3.1.1. 등록 후 변경(6.2조)

- 사전승인을 받은 6.2조 사업의 사업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 장에게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6.2조



수행주체

- 승인된 6.2조 사업의 사업참여자

관련 서류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별지 4]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
- 변경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증빙자료

[별지 제4호서식]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	
사업명	
사업자명	
등록고유번호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미치는 영향	
<small>「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여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small>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	
<small>※ 제출서류</small> 1. 변경된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국제감축사업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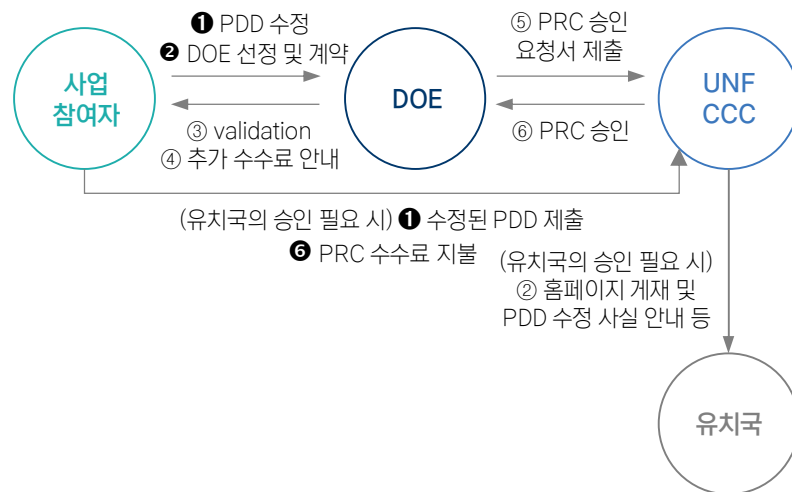
참고 사항

- 6.4조 사업과 달리, 사업 변경에 따른 수수료 없음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됨

3.1.2. 등록 후 변경(PRC) - PRC 대상 여부 확인(6.4조)

- 승인된 6.4조 사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경우, PRC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관련 조건 준수하여 등록 후 변경(Post Registration Changes) 절차 수행

6.4조



수행주체

- 승인된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

PRC 대상범위

- ①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 적용된 방법론, 표준화된 베이스라인 및 기타 방법론적 규제 문서에 따른 일시적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 ▶ 수정 불필요, 모니터링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술
 - ② 영구적인 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 수정
 - 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 모니터링 계획 포함
 - 등록된 모니터링계획,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또는 기타 규제문서의 영구적 변경사항
 - 사업 설계 변경
 - ▶ 수정 및 DOE validation 필요
 - ③ 타 감축제도에 등록되거나 중복된 경우
- 활동표준(Article 6.4 activity standard for projects)에 명시된 조건 준수

참고사항

PRC 대상여부 확인 - 영구적 변경사항(6.4조)

영구적 변경사항의 구분

- ① 수정
- ② 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 ③ 모니터링 계획 포함
- ④ 모니터링 계획, 적용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규제문서의 영구적 변경사항
- ⑤ 사업 설계 변경

? 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기준

- 변경된 시작일은 PDD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 시작일을 최대 1년 늦추거나 당기는 것은 변경 대상 아님
- 시작일을 1년 이상 늦추려면 방법론과 표준 베이스라인의 선택과 적용에 대한 변경 가능 여부 추가 검토 필요

? 동일 기술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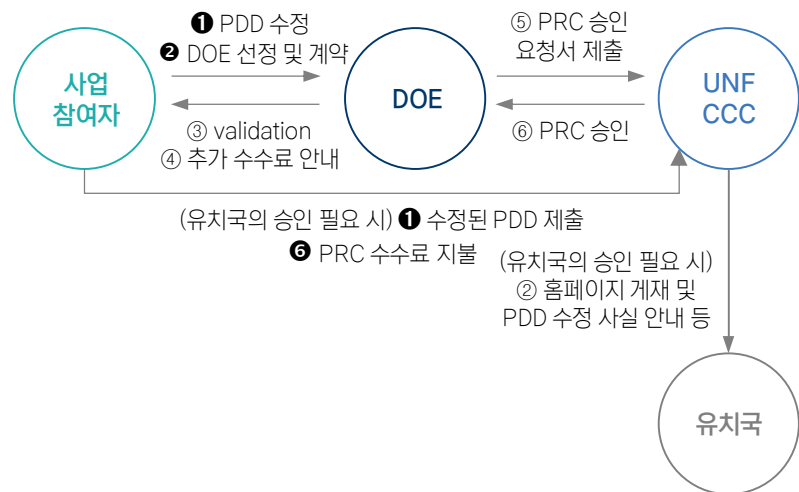
-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변환 프로세스를 기술이라고 하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동일 기술로 간주함
- ① 동일한 종류의 출력을 제공하고 동일한 종류의 장비 및 변환 프로세스를 사용
- ② 동일한 종류의 효과를 가져오는 동일한 조치를 취함

영구적 변경사항	주요 내용	
수정	6.4조 사업 등록 시 사업 정보 또는 고정된 매개변수를 수정한 경우에 해당	
유효기간 ? 시작일 변경	6.4조 사업의 감축량 발행 요청 없으며, 변경사항이 활동 표준에 명시된 허용 한도 내일 경우에 해당	
모니터링 계획 포함	활동 참가자가 6.4조 사업 등록 시 모니터링 계획을 생략하기로 한 이후에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 (PDD 수정 시 고려사항) 모니터링 계획 설계 및 PDD의 활동의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모니터링 계획, 적용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규제문서의 영구적 변경사항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을 이행할 수 없거나, 적용된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또는 기타 방법론적 규제 문서에 따른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PDD 수정 시 고려사항)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사유와 대체되는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기술해야 하며, 영구적인 변경사항 또는 편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순제거량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제안된 모니터링 방안의 보수적인 가정 등을 적용해야 함	
사업 설계 변경	용량 증대	① Article 64 validation and verification standard for projects에 명시된 중요성 평가(materiality) 기준까지 - 연간 총 온실가스 감축량 및 순제거량이 500,000톤 이상일 경우 0.5% - 연간 총 온실가스 감축량 및 순제거량이 300,000톤 초과 ~ 500,000톤 미만일 경우 1% - 연간 총 온실가스 감축량 및 순제거량이 300,000톤 이상 2% ② 유치국 승인 시 ①의 정량적 기준 초과하여 가능
	용량 감소	등록된 PDD 내 용량보다 감소
	기술 확장/추가	유치국의 승인 시 가능 - 기 등록된 PDD에 기술/조치를 보완하는 대량 혹은 에너지 전환 등의 기술/조치를 추가할 경우 - 2조(b)항의 "동일 기술"보다 발전된 기술 도입할 경우
	기술 변경	2조(b)항의 "동일 기술"의 정의에 따라 기 등록된 PDD의 기술/조치의 변경
	사업장 변경	등록된 PDD 내의 여러 개 사업장에서 1개 이상의 사업장을 제거 혹은 추가할 경우
	매개변수 변경	사업참여자가 통제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변경할 경우
	기타	타 방법론, 타 표준 베이스라인 또는 기타 방법론적 규제 문서의 변경/추가에 따라 더 적합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적용 등 적용된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규제 문서의 최신 버전으로 자발적 업데이트 하거나 타 방법론으로 변경

3.1.3. 등록 후 변경(PRC) - PDD 수정 및 PRC 승인(6.4조)

- 승인된 6.4조 사업의 영구적 변경사항에 따른 PRC 내용을 PDD에 반영하여 수정
- DOE는 Validation 보고서, 수정된 PDD 등과 함께 UNFCCC 사무국에 PRC 승인 요청서 제출
- 사무국은 수수료 계산하여 DOE에 전달 및 사업등록 단계(요청처리-SB검토요청-등록요청확정) 동일하게 수행

6.4조



수행주체

- 승인된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

기한

- 영구적인 변경사항 항목별로 PRC 승인 요청서 제출 기한이 상이함
- DOE가 PRC 승인 요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PDD를 수정하고 사전에 Validation 받을 수 있도록 기한 준수 필요
 - ①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또는 순제거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 발생 시점 이후
 - ②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첫 번째 감축량 발행 신청 이전까지
 - ③ 모니터링 계획, 적용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기타 방법론적 규제문서 또는 사업 설계 변경의 경우: 모니터링 관련 내용이 변경된 최소 1년 이내

관련 서류

- ① 수정된 PDD(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 ② A6.4M-PRC-FORM(서식미정)
- ③ PRC에 대한 Validation 보고서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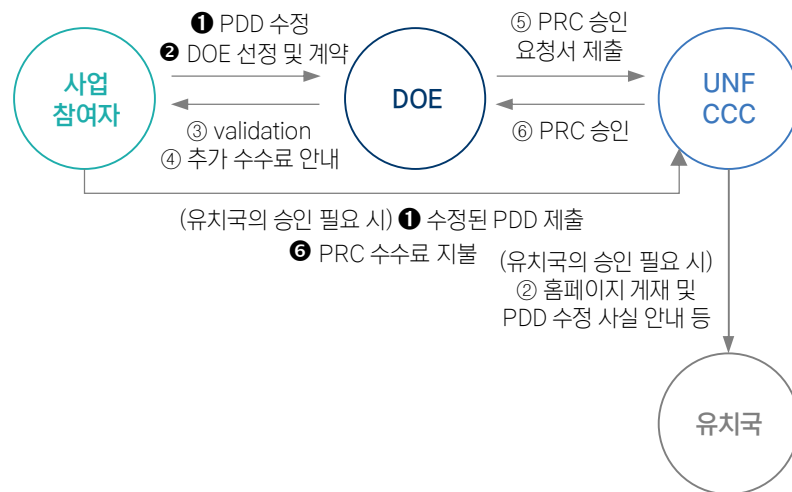
☑ PDD 수정 시 포함 내용

- 승인된 6.4조 사업의 다음 사항에 대한 적용 조건 준수 여부
 - ① 적용된 방법론
 - ② 표준 베이스라인
 - ③ 기타 방법론 규제 문서
- 사업 경계와 배출원 및 누출·배출물의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영향
- 다음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준수 여부
 - ① 적용된 방법론
 - ② 적용된 표준 베이스라인
 - ③ 기타 적용된 다른 방법론적 규제 문서
-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된 요구사항(측정 기간, 모니터링 장비의 품질 : 검교정 주기, QA, QC 절차 등)과 비교하여 사업의 모니터링의 정확성 및 완전성 수준
- 사업의 추가성

3.1.4. 등록 후 변경(PRC) - PRC 수수료 지불(6.4조)

- 사업참여자는 DOE를 통해 전달받은 PRC 수수료(Post registration change fee)를 지불
- 단, 해당 사업이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될 경우 면제
- PRC 승인 요청에 따른 수수료는 1건 당 1,500 USD(고정)

6.4조



수행주체

- 승인된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

기한

- PRC 승인 요청 시 지불되어야 함
※ 요청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함

참고사항

- PRC로 인해 사업 규모가 증가하여 등록비가 증액된 경우, 납부된 등록비와 차액을 계산하여 PRC에 추가상환
- DOE를 통해 PRC 승인 요청이 철회되거나, 사무국과 SB가 PRC 승인을 거부할 경우 기 지불된 수수료는 2가지 기준에 따라 환불
 - ① 사무국이 완전성 확인 단계 시작 전 DOE가 PRC 승인 요청 철회 시 "100%" 환불
 - ② 사무국이 완전성 확인 단계 시작 후에는 DOE가 PRC 승인 요청을 철회하더라도 환불되지 않음

적합 대상

- 사업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정사항
- 사업설계 변경이 적용조건 준수 여부, 추가성, 규모 중 어느 하나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변경된 모니터링 계획이 감축량 및 제거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경우
- 변경된 모니터링 계획이 적용 가능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3.2. 모니터링 데이터 취합(6.2조&6.4조)

- 승인된 6조 사업의 사업참여자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적용된 방법론의 모니터링 인자별 데이터를 취합
- 데이터의 단위, 출처, 측정방법, 모니터링 주기, QA/QC 절차 등 준수

수행주체

-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참여자

취합 대상

- 사전 고정 데이터 및 매개변수
- 모니터링 데이터 및 매개변수

기한

- 인증유효기간내 모니터링 기간별로 취합

필수양식

- 별도 양식 없음
- 단, 신뢰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서 데이터 값 확인 가능해야함
(예. 전력량계데이터, 설비 사양서, invoice, 검교정 주기 등)

참고사항

- 승인된 PDD 내의 모니터링 계획 준수 필요
- 적용된 방법론의 인자별 모니터링 요구사항 준수 필요
- PDD 내 배출 감축량 산정 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 추가 증빙 필요

! 데이터/매개변수 취합 시 유의사항

-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에서 요구하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배출량, 누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순 제거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매개변수와 적용되는 기타 매개변수를 제공해야함
-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적합한 주기로 데이터 기록 관리해야함
-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장비의 정확도 등급, 세부 정보, 검교정 정보(주기, 검교정 일자 및 유효기간 등)를 함께 취합해야함
- 데이터 및 매개변수가 측정/계산되는 방법과 측정 값 및 주기를 기록함
- 모니터링된 데이터와 매개변수가 샘플링 기법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등록된 모니터링 계획에 기술된 샘플링 계획에 따라 샘플링이 수행되었는지 증빙할 수 있어야함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예시(6.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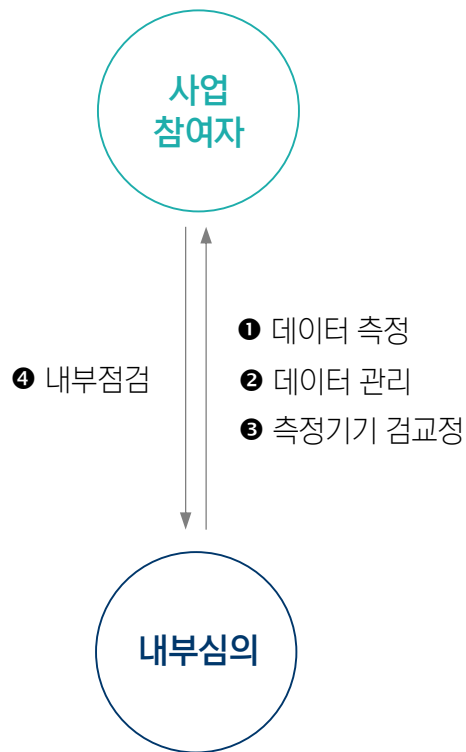
6.4조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표 예시

Data / Parameter: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인자, 계수 중 유효기간 동안 실제로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데이터로 대부분 약자 기호로 표시됨
Data unit:	방법론에 명시된 단위 사용 (예시 : ton, Mwh 등)
Description:	모니터링 데이터/인자에 대한 설명
Measured/ Calculated / Default:	측정값, 계산 값, 기본값 여부를 선택함
Source of data:	사업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예시 : 국가 통계, 사업참여자 등) 설명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출처가 있을 경우, 데이터의 우선순위 설명해야 함
Value(s) of Monitored parameter:	모니터링된 값 명시 ※ Raw 데이터 기반으로 계산된 값도 가능
Measurement procedures (if any):	적용된 데이터의 측정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 데이터 측정에 적용된 표준, 데이터 측정 정확도, 데이터 측정 계측기 등
Monitoring frequency:	방법론에 명시된 모니터링 주기 준수 필요(연속, 매시간, 매월, 매년 등)
QA/QC procedures:	방법론에 명시된 QA/QC 절차 준수 필요
Any comment:	기타의견 또는 특이사항 기술

3.3.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측정기 검교정 관리(6.2조&6.4조)

- 승인된 국제감축사업 사업참여자는 등록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 모니터링을 수행
- 사업참여자는 측정기기 관리, 불확도 관리, 데이터 관리 등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과 품질보증 활동 수행
- 단, 6.2조 사업참여자의 경우, 모니터링 관련 세부 규칙 및 양식은 국제감축협의체에서 결정

6.2조 & 6.4조



수행주체

-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참여자

기한

- 모니터링 기간

주요내용

- 모니터링(모니터링 도식도, 모니터링 계획, 모니터링 주기, 모니터링 방법 등)
- 데이터 관리(자료 수집, 자료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자료보관 등)
- 측정기 검교정 관리(측정기기 검교정 주기, 측정기기 검교정 기관 등)

필수양식

- 모니터링 도식도
- 데이터 관리일지
- 측정기기 검교정 성적서

! 주의사항

- 모니터링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므로 데이터 품질관리
-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기로 데이터 측정
- 전체 모니터링 기간동안 데이터 누락 없이 모니터링 실시
- 측정기기의 검교정은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검교정주기에 맞추어 수행 필요

측정기 검교정 미진행 시 데이터 적용 값 예시(6.4조)

① 측정기 검교정 미진행 시 데이터 적용

- 6.4조 감축사업 타당성평가 및 인증 표준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의 최대허용오차는 $\pm 5\%$ 이며, 매년 검교정을 수행하여야 함
- 검교정 주기를 지키지 않아 지연된 상태에서 검교정을 하였을 경우, 지연된 검교정에서의 허용오차 범위와 전력량계의 최대허용오차 범위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전력사용량 값을 적용해야 함
- 이에 따라 측정기기 검교정 유무는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사업참여자는 주의 깊게 측정기기 검교정 관리하여야 함

② Case1. 지연된 검교정에서 확인된 오차가 최대허용오차보다 작은 경우

측정값	데이터명	지연된 검교정 오차	수정값
100MWh	전력수출량	$\pm 2\%$	$100(1 - \text{최대허용오차}/100) = 95\text{MWh}$
100MWh	전력수입량	$\pm 2\%$	$100(1 + \text{최대허용오차}/100) = 105\text{MWh}$

③ Case2. 지연된 검교정에서 확인된 오차가 최대허용오차보다 큰 경우

측정값	데이터명	지연된 검교정 오차	수정값
100MWh	전력사용량	$\pm 7\%$	$100(1 - \text{지연된 검교정 오차}/100) = 93\text{MWh}$
100MWh	전력사용량	$\pm 7\%$	$100(1 + \text{지연된 검교정 오차}/100) = 107\text{MWh}$

사업자를 위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제2장

4. 감축실적 발행

4.1.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6.2조&6.4조)

- 사업참여자는 감축량 인증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따라 취합한 데이터를 근거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기 승인된 사업의 이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또는 순 제거량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에 기술

(참고) CDM 양식

CDM-MR-FORM

Monitoring report form for CDM project activity (Version 09.0)			
Complete this form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attached at the end of this form.			
MONITORING REPORT			
Title of the project activity			
UNFCCC reference number of the project activity			
Version number of the PDD applicable to this monitoring report			
Version number of this monitoring report			
Completion date of this monitoring report			
Monitoring period number			
Duration of this monitoring period			
Monitoring report number for this monitoring period			
Project participants			
Host Party			
Applied methodologies and standardized baselines			
Sectoral scopes			
Amount of GHG emission reductions or net anthropogenic GHG removals achieved by the project activity in this monitoring period	Amount achieved before 1 January 2013	Amount achieved from 1 January 2013 until 31 December 2020	Amount achieved from 1 January 2021
Amount of GHG emission reductions or net anthropogenic GHG removals estimated ex ante for this monitoring period in the PDD			

수행주체

-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참여자

기한

- (6.4조) 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발행 요청해야 하므로 그 전까지 작성 필요

필수양식

- (6.4조) UNFCCC에서 제공하는 최신 버전의 A6.4M-MR-FORM(서식 미정)

참고사항

- (필요 시) 전문 컨설팅 기관 활용 가능
- 모니터링 기간 내 누락된 기간 없이 인증유효기간을 모두 포괄해야 함
- 첫 번째 모니터링 기간은 PDD에 명시된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시작됨(※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실제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할 때까지 해당 기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0”으로 보고되어야 함)
- 모니터링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값을 명시하고, 모니터링 기간의 총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서 차감해야 함
-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및 순 제거량은 연도별로 작성해야 함



작성 내용 참고

✓ ① 일반정보 작성 내용

- 승인된 사업명, UNFCCC 참조 번호, 사업참여자명, 사업 위치
- 적용된 방법론명, 버전, UNFCCC 참조 번호 및 적용된 표준
- 인증유효기간 유형(고정형/갱신형),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및 기간
- 모니터링 차수 및 기간, 모니터링 기간에 적용된 PDD 버전

✓ ② 중복 발행 방지

- 사업참여자는 타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이미 발행을 요청했거나 발행 요청예정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함
- 사업참여자의 중복 발행이 확인될 경우, A6.4ERs의 발행이 DOE 혹은 SB에 의해 거부됨

✓ ③ 사업 개요

- 사업참여자는 ❶ 설치된 기술, 기술의 프로세스 및 장비에 대한 설명 ❷ 관련 일정(착공, 시운전, 운영 개시 등)을 포함한 사업의 시행 및 실제 운영에 대한 정보(※2개 이상의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별로 제공 필요)를 제공해야 함
- 사업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PRC 여부와 PRC 했을 경우, 승인 날짜를 표기해야 함

✓ ④ 모니터링 시스템

-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모든 관련 모니터링 포인트를 나타낸 도표(그래픽 이미지)를 제공해야 함
- 모니터링 시스템의 설명에는 데이터 수집 절차(데이터 생성, 집계, 기록, 계산 및 보고를 포함한 정보 흐름), 조직 구조, 인력의 역할 및 책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절차 등이 포함

✓ ⑤ 감축량 산정

- 산정식과 산정식에 따른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총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순제거량 값을 작성함
- PDD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실제 모니터링되어 산정된 값을 비교 표로 제시함
- 승인된 PDD에 명시된 것과 다른 모든 정보(예: 데이터 및/또는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순 제거량의 감소/증가의 원인을 서술해야 함

4.2. 검증기관 선정 및 계약(6.2조&6.4조)

- 사업참여자는 작성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증해줄 검증기관을 선정
- 관련 요건 준수여부와 기관별 상이한 비용, 소요기간 등을 확인하여 검증기관 선정 및 계약 필요

6.2조 사업

수행주체	• 6.2조 사업의 사업참여자
필수양식	• 별도 양식 없음
참고사항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3항에 해당하는 검증기관과 계약 필요

6.4조 사업

수행주체	• 6.4조 사업의 사업참여자
기한	• 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발행 요청해야 하므로 그 전까지 작성 필요
참고사항	• SB 승인 DOE 여부 확인 • 검증 및 인증 분야 일치 여부 확인 • 사업의 등록/갱신 시 validation하지 않은 DOE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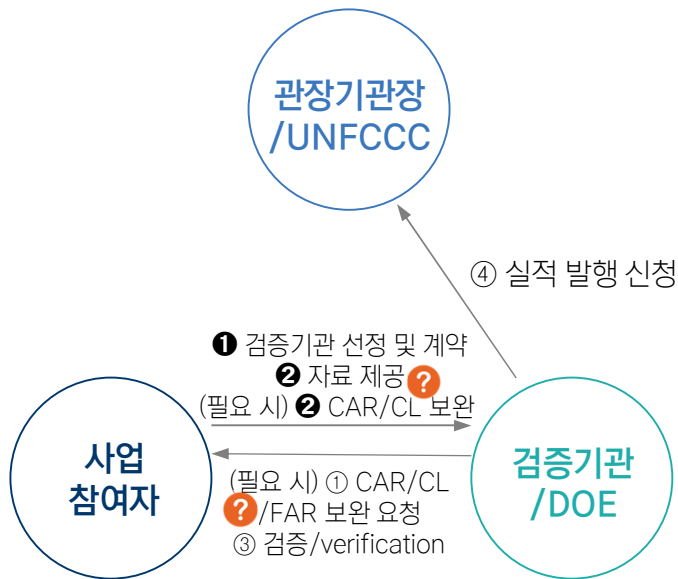
확인사항

- 검증기관(DOE)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고려
- 검증 대상 사업장 개수 및 위치, 모니터링 기간, 사업 규모에 따른 비용 고려
- 검증 기간 및 관련 일정에 대한 계약 내용 포함
- 확보한 데이터 및 정보 보안·유지, 자료 저작권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
- 해당 6.2조 또는 6.4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검증 실적 등

4.3. 검증(6.2조&6.4조)

- 사업참여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증기관/DOE가 검증
- 사업의 이행,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순 제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산정,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타당성평가 및 검증 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 작성

6.2조 & 6.4조



? CAR: Corrective Action Request 시정조치 요구사항

CL: Clarification Request 추가 해석 요구사항

FAR: Further Action Request 향후 조치 요구사항

수행주체

- (6.2조) 검증기관
- (6.4조) DOE

기한

- (6.2조) 별도 기간 없음
- (6.4조) 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발행 요청해야 하므로 그 전까지 작성 필요

관련 양식

- (6.2조) 검증보고서(현재 별도 양식 없음)
- (6.4조) A6.4M-VCR-FORM

제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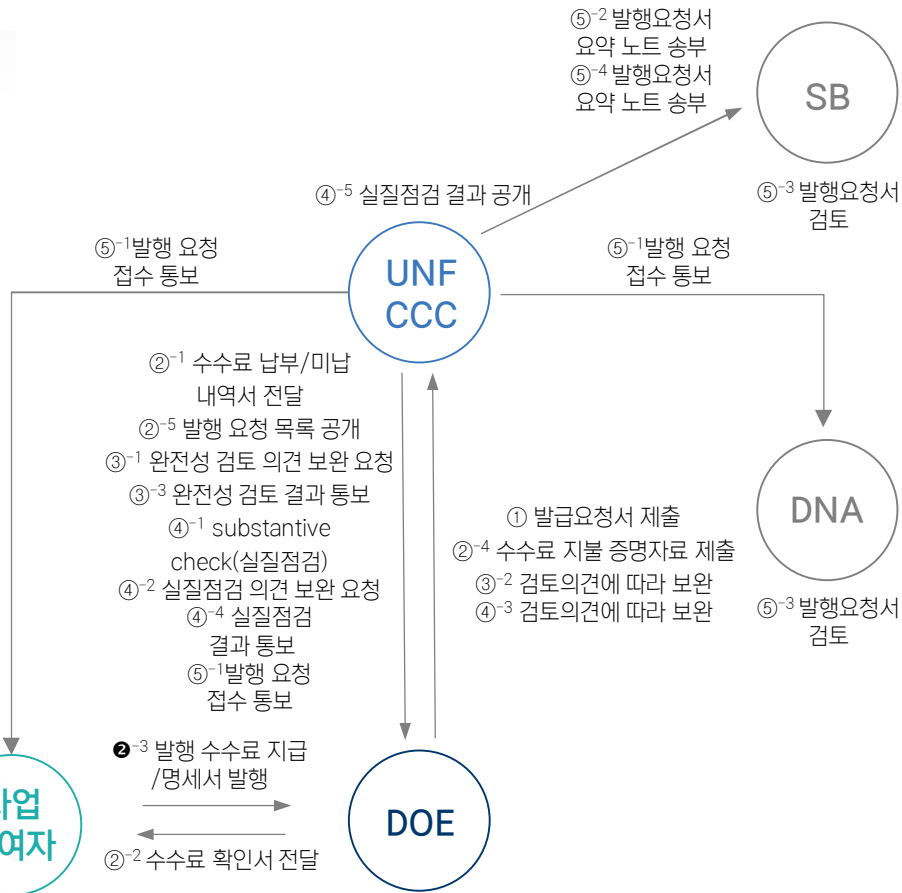
- 모니터링보고서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순 제거량 산정 Tool
- PRC 사항,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한 최신 버전의 PDD와 해당 PDD의 Validation 의견
- Validation 보고서
- (해당 시) 이전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보고서
- 적용된 방법론, 표준 베이스라인 및 방법론적 규제 문서
- 6.4조 사업의 환경영향, 사회적 영향 및 지속가능 개발 공동 이익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 6.4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또는 순 제거량 관련된 기타 정보 및 참고자료(예, IPCC 보고서, 국가 전력망 발전 데이터 또는 실험실 분석 자료, 국가 규정 등)

4. 감축실적 발행 > 4.4. 발행요청 & 4.5. 실질점검 & 4.6. 발행요청 검토

4.4. 발행요청 & 4.5. 실질점검 & 4.6. 발행요청 검토(6.4조)

- 6.4조 사업참여자는 DOE 검증결과를 기반으로 A6.4ERs 발급요청 시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 UNFCCC 사무국의 완전성 평가, 실질점검에 따른 대응, 수수료 차액 정산을 단계별로 수행

6.4조(발행요청&실질점검)



수행주체

- DOE
- UNFCCC 사무국

기한

- (발행요청)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발행요청 필요
- (실질점검)A6.4ERs 발행요청에 대한 완전성 검토 통과 이후 21일 이내

필수양식

- 발행요청서 양식 개발 예정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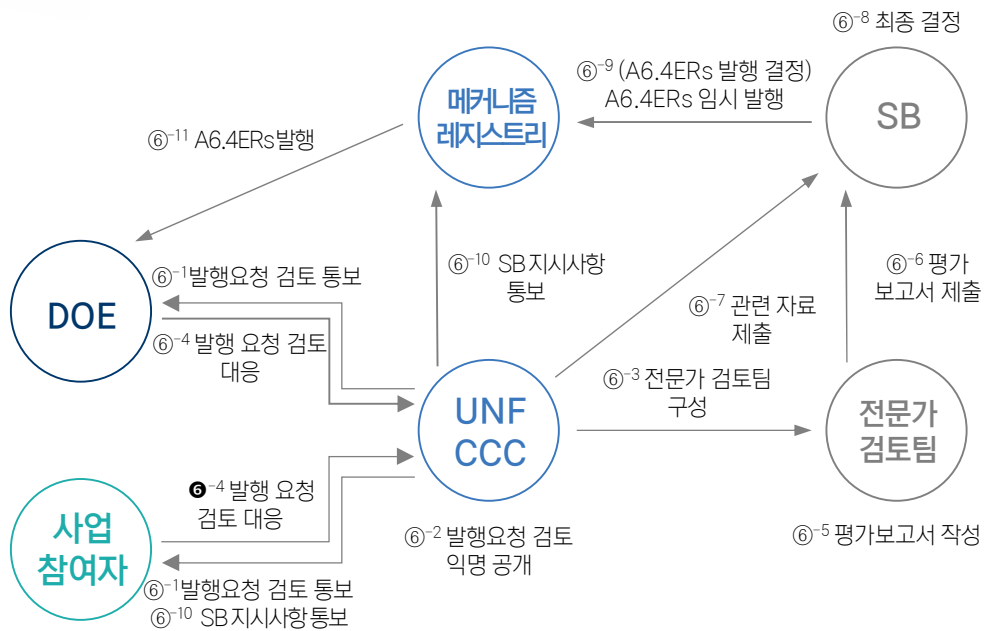
- 검증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기타 증빙문서
- DOE의 검증 및 인증 보고서
- (A6.4ERs 분배 시) 분배 배율 및 분배에 필요한 계정

4. 감축실적 발행 > 4.4. 발행요청 & 4.5. 실질점검 & 4.6. 발행요청 검토

4.4. 발행요청 & 4.5. 실질점검 & 4.6. 발행요청 검토(6.4조)

- 6.4조 사업참여자는 DOE 검증결과를 기반으로 A6.4ERs 발급요청 시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 UNFCCC 사무국의 완전성 평가, 실질점검에 따른 대응, 수수료 차액 정산을 단계별로 수행

6.4조(발행요청 검토)



수행주체

- DOE
- UNFCCC 사무국

기한

- (발행요청)인증유효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발행 요청 필요
- (실질점검)A6.4ERs 발행요청에 대한 완전성 검토 통과 이후 21일 이내

필수 양식

- 발행요청서 양식 개발 예정

첨부 서류

- 검증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기타 증빙문서
- DOE의 검증 및 인증 보고서
- (A6.4ERs 분배 시) 분배 배율 및 분배에 필요한 계정

사업자를 위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제3장

5. 감축실적 이전 및 활용

5.1.1. 취득신고(6.2조&6.4조)

- 사업참여자는 국외 감축실적을 취득 후 국내에서 감축실적을 활용하기 위해 관장기관의 장에게 취득 신고
- 법정 기한은 없으나 국제감축실적 취득 후 즉시 신고

6.2조 & 6.4조



! 주의사항

- 취득자가 다수일 경우 감축실적 배분서류 제출
- 사업참여자 간 감축량 배분이 동일한 경우 배분량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 검증보고서 및 모니터링보고서 등 제반서류 첨부
- 사업대표자 명의로 신고 필요
- 정부가 사업참여자인 경우 취득신고 불필요
- ITMO에 한하여 감축실적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Non-ITMO에 대해서는 신고 불필요

수행주체

- 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참여자

기한

- 취득 후 즉시 신고
- 전자적 방식(국제감축등록부)을 통해 신고
- ※ 국제감축등록부는 파리협정 제6조 및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구축된 보고플랫폼과 상호 연계 가능

주요내용

- 사업개요 정보(사업명, 사업참여자명)
- 사업정보(사업대상국, 등록 고유번호, 사업등록일, 인증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 감축실적정보(감축실적 취득일, 감축실적 취득량)

필수양식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 감축실적 배분서
- 사업참여자가 작성한 모니터링보고서
-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6.2조 & 6.4조)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 대상국	
등록 고유번호	
사업 등록일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년 월 일
국제감축실적 취득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p>	
<p>※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수행자 간 감축량의 배분에 대한 확인서 등 배분량 확인에 필요한 서류(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업계획서와 사업수행자 간 감축량의 배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 출처 링크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5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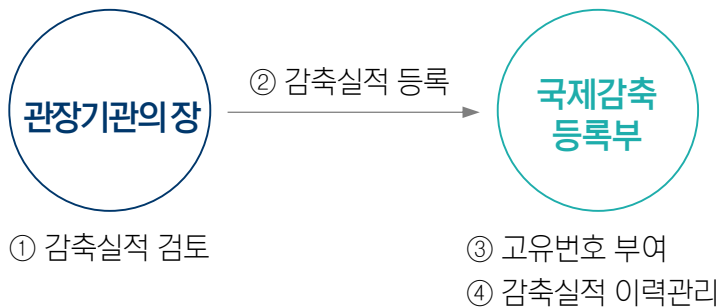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5%AD%EC%A0%9C%EA%B0%90%EC%B6%95%EC%82%AC%EC%97%85%20%EA%B3%A0%EC%8B%9C#liBgcolor0>

5. 감축실적 이전/활용 > 5.1. 감축실적 취득신고 > 5.1.2. 검토,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이력관리

5.1.2. 검토, 국제감축등록부 등록, 이력관리(6.2조&6.4조)

-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신청된 감축실적에 대해 검토 및 등록
- 감축실적에 대한 거래, 이전, 처분 등 행위 발생 시 국제감축실적 고유번호를 통해 이력 관리

6.2조 & 6.4조



수행주체

-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기한

- 취득신고 후 관장기관 자체 일정에 따라 진행

주요내용

- 신청된 감축실적에 대한 이상여부 확인(감축실적 발행량, 사업참여자, 배분비율, 검증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등)
- 국제감축등록부에 감축실적 등록 및 고유번호 발행
- 감축실적 거래, 이전, 처분 등의 이력관리 추진

필수양식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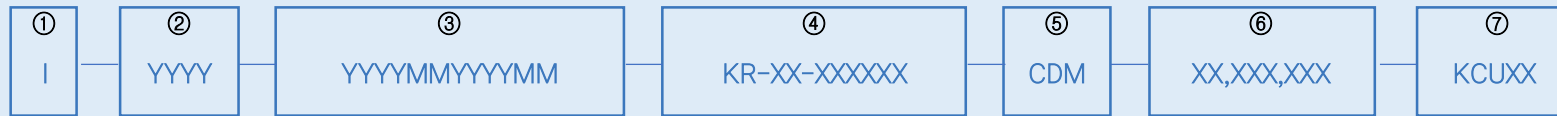
! 주의사항

- 검증보고서, 모니터링보고서 등 문서 간 감축실적 일치여부
- 국제감축실적 고유번호 부여 필요
- 국제감축실적 이력 관리 시 가용성과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감축등록부 관리 필요



Information

상쇄등록부시스템 고유번호 부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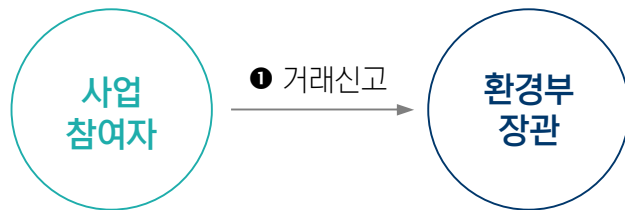


- ① 외부사업 인증기호 : 고정된 기호 (I : Issued - 발행을 의미)
- ② 발급년도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 발급년도 (4자리로 기록)
- ③ 감축량 발생기간 : 감축실적 발생기간(년, 월, 순으로 12자리로 기록)
- ④ 외부사업 접수번호 : '외부사업고유번호' 중 수행국가, 사업 분류, 외부사업 등록고유번호 기록
- ⑤ 해외 감축제도 기호 : 해외 감축제도의 기호를 기록 (예: 청정개발체제사업 → CDM)
- ⑥ 실적 단위별 번호 :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 당 부여되는 번호
- ⑦ 상쇄배출권 전환 기한 : 상쇄배출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종료년도 기록

5.2.1. 거래신고(양도/양수)(6.2조&6.4조)

-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거래 및 거래자 정보가 포함된 국제감축실적 거래신고서와 거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제출

6.2조 & 6.4조



수행주체

- 사업참여자(양도인 및 양수인)

기한

- 거래 후 즉시 신고

주요내용

- 거래 정보(국제감축실적 취득일, 국제감축실적 거래일, 거래 구분, 거래 수량, 총 거래가격, 단가)
- 거래자 정보(사업참여자명, 사업참여자 등록번호, 계정 대표자명, 연락처)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계약서
- 그 밖에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필수양식

- 별지 제6호 서식(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 양도인과 양수인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합의 공증서류

! 주의사항

- 양도자의 경우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표기 필요
- 거래신고에 대한 법정기한은 없지만 즉시 신고 필요
- 거래신고서 제출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국제감축실적 거래에 대한 합의 서류 첨부 필요
- 사업대표자 명의로 신고 필요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최신 양식 사용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6.2조 & 6.4조)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양도자의 경우)	년 월 일			
국제감축실적 거래일	년 월 일			
거래 구분	<input type="checkbox"/> 매도	<input type="checkbox"/> 매수		
거래 수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가격	총 거래가격	단가		
양도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정 대표자명			
	연락처	전화		E-mail
양수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정 대표자명			
	연락처	전화		E-mail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사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장 기 관 의 장 귀 하</p>				
<p>※ 제출서류</p> <p>1. 양도인과 양수인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합의 공증서류</p>				

❖ 출처 링크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6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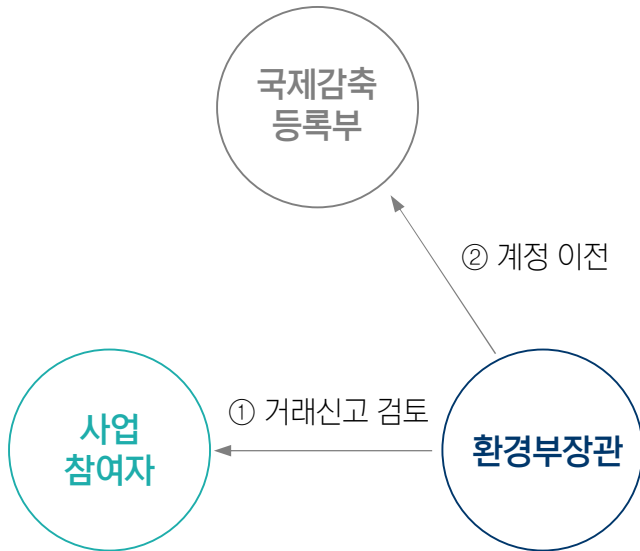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5%AD%EC%A0%9C%EA%B0%90%EC%B6%95%EC%82%AC%EC%97%85%20%EA%B3%A0%EC%8B%9C#liBgcolor0>

5.2.2. 검토, 국제감축등록부 계정 이전(6.2조&6.4조)

-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실적 거래신고서 검토 및 국제감축실적 수량을 양도인에서 양수인 계정으로 이전
- 사업참여자(양도인, 양수인)는 거래를 위해 국제감축등록부 계정 생성 필요

6.2조 & 6.4조

③ 감축실적 이력관리



? 국제감축등록부 계정 유형

발행계정: 국제감축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
보유계정: 정부 및 사업참여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
취소계정: 취소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
정부보유계정: 정부 보유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는 계정
처분계정: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사용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

수행주체

- 환경부장관

기한

- 거래신고 후 즉시 진행

주요내용

- 국제감축등록부 보유계정 등록 여부(계정번호, 소유주, 계정유형)
- 양도인, 양수인 간 국제감축실적 거래 합의 성립 여부

필수양식

- 해당 없음

!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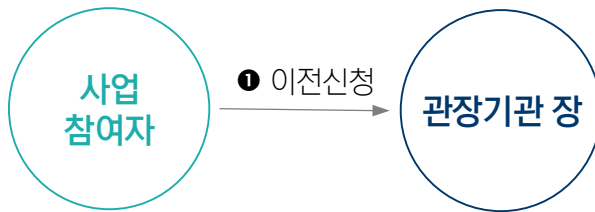
- 보유계정에 등록된 사업참여자 정보와 계약서에 기록된 사업참여자 정보 일치성 확인
- 사업참여자는 보유계정의 정보가 변경될 시 수시로 현행화 작업 필요
- 양도인의 보유계정에 국제감축실적이 존재하는지 확인 필요
- 반드시 감축실적을 양수 받는 사업참여자도 국제감축등록부에 보유계정 생성 필요
- 양도인과 양수인이 거래신고 당시 제출한 거래 합의 공증서류(예. 계약서) 검토 필요
- 계정 간 이전되는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 필요

5.3.1. 이전신청(6.2조&6.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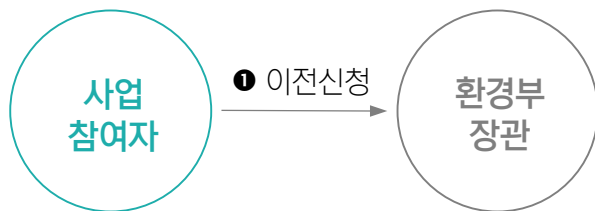
- 사업참여자는 감축실적을 국내외 이전하는 경우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관장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 제출

6.2조 & 6.4조

Case1 : 국내 최초 이전



Case2 : 국내 이전 / 국외 이전



수행주체

- 사업참여자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으나 즉시 신청 필요

주요내용

- 사업개요 정보(사업명, 사업참여자명)
- 사업정보(사업대상국, 등록 고유번호, 사업등록일, 인증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 감축실적 정보(국제감축실적 취득일, 국제감축실적 취득량, 국제감축실적 이전량)
- 이전 목적(중장기 감축목표 달성, 상쇄배출권 전환, 국제적 감축목적, 기타)

필수양식

- 별지 제7호 서식(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 6.2조 사업의 필요 문서
 - ① 유치국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 활용 동의 확인 문서
 - ② 유치국의 상응조정 실시 협약서 등 상응조정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6.4조 사업 필요 문서
 - ① 6.4조 감독기구(SB)로부터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서류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6.2조 & 6.4조)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신청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 국내 이전	<input type="checkbox"/> 해외 이전	<input type="checkbox"/>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 이전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 대상국			
등록 고유번호			
사업 등록일	년	월	일
인증 유효기간			
모니터링 기간			
국제감축실적 취득일	년	월	일
국제감축실적 취득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국제감축실적 이전량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을 1국제감축실적(ITMO)으로 환산		
국제감축실적 이전 목적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input type="checkbox"/>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활용	
	<input type="checkbox"/> 국제적 감축목적(CORSIA)	<input type="checkbox"/> 기타 목적(사유 :)	
<p>「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이전하기 위해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장 기 관 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 귀하</p>			
<p>※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한 경우 협정 제6.4조에 따라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국제감축사업 시행지 국가의 상용조정 실시 협약서 등 상용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출처 링크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별지7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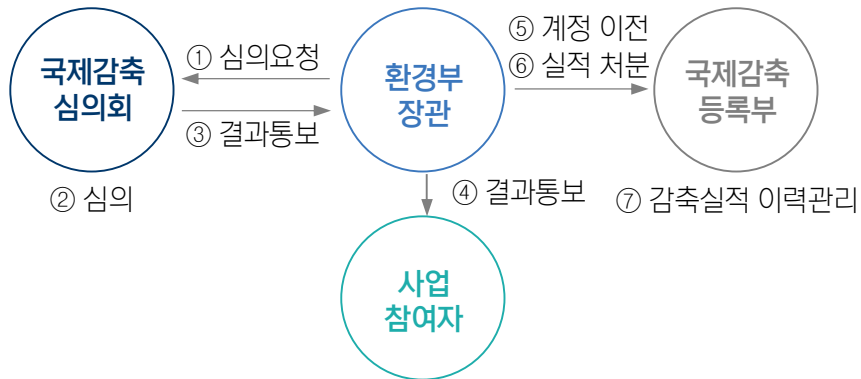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A%B5%AD%EC%A0%9C%EA%B0%90%EC%B6%95%EC%82%AC%EC%97%85%20%EA%B3%A0%EC%8B%9C#liBgcolor0>

5.3.2. 심의, 이전 및 처분(6.2조&6.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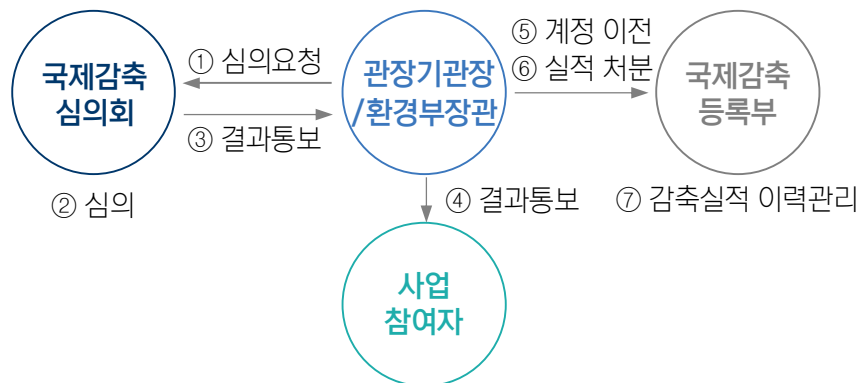
-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이전신청 관련 국제감축심의회에 심의 요청 및 승인 여부 결정
- 국제감축심의회는 유치국의 이전 동의 여부, NDC 활용 여부, 상응조정 실시 확약 여부 등 심의

6.2조 & 6.4조

Case1 : 국내 이전 / 국외 이전 + NDC 달성 목적



Case2 : 국내 최초 이전 / 국내 이전 / 국외 이전 + NDC 달성 이외 목적



※국내 최초 이전 : 부문기관의 장, 국내 이전/국외 이전 : 환경부장관

수행주체

- 환경부장관, 관장기관의 장, 국제감축심의회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으나 즉시 진행

주요내용

-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승인 심의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활용을 위한 정부보유 계정으로의 이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된 감축실적에 대한 처분계정으로의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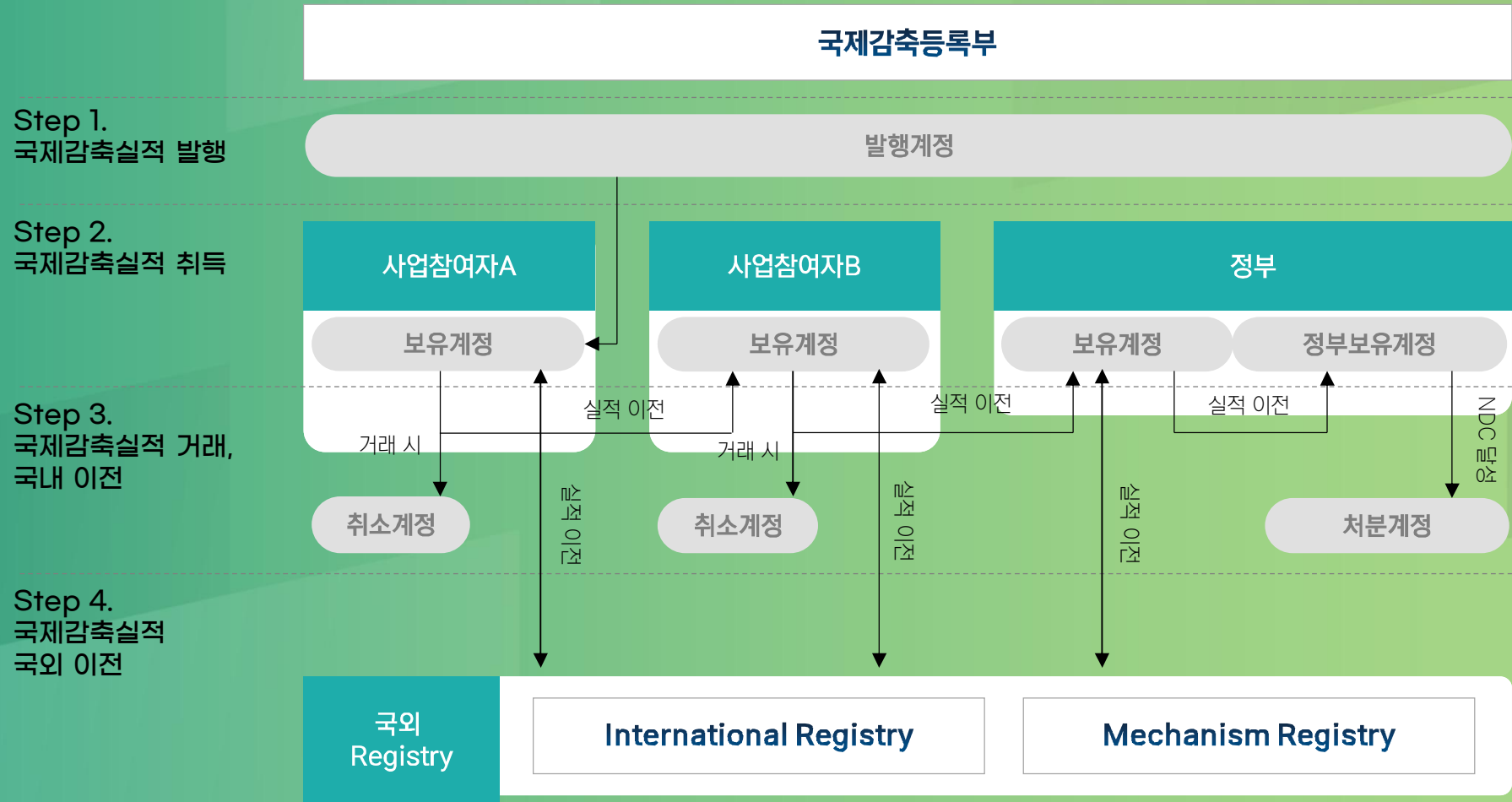
필수양식

- 해당 없음

! 주의사항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전 신청서에 명확한 이전 목적 선택 필요
- 계정 간 이전되는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 필요

국제감축등록부 계정 체계



사업자를 위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가이드라인

제4장

부록



이 부록 - 가이드라인 용어 정리

부록 내 가이드라인에 사용된 전문 용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용어 정리” 작성
 용어에 대한 국문 및 영문 표기, 세부 용어 설명 서술하여 사업자의 이해도 향상

Annex I

가이드라인 용어 정리

연번	용어		용어설명
	국문	영문	
1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협의. 공동의 자원화된 책임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
2	고도의정서	KP, Kyoto Protocol	1997년 일본 고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된, 지구온난화의 규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국제적 이행장면을 담은 의정서
3	고도메커니즘	Kyoto Mechanism	대부분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보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성(또는 신축성) 원리가 도입된 고도메커니즘을 고안.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및 배출권거래제도가 이에 속함
4	파리협정	PA, Paris Agreement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고도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협정이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5	시장/비시장 메커니즘	Market/ Non-Market Mechanism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파리협정 제6조에 포함되어 있는 시장기반 접근법(파리협정 제6.2조, 제6.4조) 및 비시장 접근법(파리협정 제6.8조)로 구성됨
6	파리협정 제6.2조	Paris Agreement Article 6.2	당사국 간 다양한 자발적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양측 메커니즘, 환경간선성 및 투명성, 상응하는 조정을 통한 이중신용 방지 등 주요 지침 준수 필요
7	파리협정 제6.4조	Paris Agreement Article 6.4	기본 청정개발체제와 유사하게 파리협정 당사국협약이 관리하는 중앙화된 양측 메커니즘. 수익금의 일부를 행정경비 및 제도적 적응지원 목적으로 분배
8	국가결정기여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9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EDS, Long-term low GHG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설정한 발전 원칙 또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NDC는 이러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중기 이행 계획으로써 역할 수행
10	지속가능 경영	ESG, 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11	규제적 탄소시장	COM, Compliance Carbon Market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 혹은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 대한민국의 경우 K-ETS 운영 중
12	자발적 탄소시장	VCM, Voluntary Carbon Market	기업이 정보, ESG 경영 달성 등 자발적 목적을 위해 배출권 혹은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시장. 대표적으로 VCS, GS 등 제도에서 운영 중
13	청정개발제도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고도의정서 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도국과 공동이행(JI)을 통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담금(User Fee)을 납부토록 하여, 이를 청정개발제도 운영비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에도 적응비용에 충당하는 제도

용어(국문)

-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분야 활용 용어

용어(영문)

-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 분야 공통 활용 용어(ref. UNFCCC)

용어설명

-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부적 설명



용어 정리(예시)

용어	용어 설명	
	국문	영문
인증유효기간	Crediting Period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후 감축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유치국	Host Country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추진되어 직접적인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국가
국가승인기구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 DNA	6.4조 사업 승인 기구로, 국가별 존재



02 부록 - CDM 방법론 요약본

대표적인 CDM 방법론 선정을 통한 “CDM 방법론 요약본” 작성
 방법론별 고유번호, 주요사항, 적용조건, 사업경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메커니즘 등 정리

연번	방법론 고유번호	방법론 명
1	ACM0012	Waste energy recovery Version 6.0 폐에너지 회수 Ver.6.0
2	ACM0014	Treatment of wastewater Version 8.0 폐수의 처리 Ver.8.0
3	AM0075	Methodology for collection, processing and supply of biogas to end-users for production of heat Version 1.0 바이오가스를 포집 및 공정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법론 Ver.1.0
4	AMS-I.D	Grid connected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Version 18.0 계통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Ver.18.0
5	AMS-II.D	Energy efficiency and fuel switching measures for industrial facilities Version 13.0 산업시설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연료 전환 조치 Ver.13.0
6	AMS-III.AJ	Recovery and recycling of materials from solid wastes Version 9.0 고형폐기물로부터의 원료 회수와 재활용 Ver.9.0
7	AMS-III.E	Avoidance of methane production from decay of biomass through controlled combustion, gasification or mechanical/thermal treatment Version 17.0 제어된 연소, 가스화 또는 기계적/열적 처리를 통한 바이오매스 부패로부터의 메탄 발생 회피 Ver.17.0
8	AMS-III.Z	Fuel Switch, process improvement and energy efficiency in brick manufacture Version 6.0 벽돌 제조에서 연료전환,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개선 Ver.6.0

134

1. "WEG 시설"
2. "WEG 시설"과 동일할 수 있는 "수급 시설"

135

주요 방법론

- 폐에너지 회수(ACM0012)
- 폐수의 처리(ACM0014)
- 바이오가스 포집 및 공정처리(AM0075)
- 계통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AMS-I.D)
- 산업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연료 전환(AMS-II.D)
- 고품폐기물로부터의 원료 회수(AMS-III.AJ)
- 바이오매스 메탄 발생 회피(AMS-III.E)
- 벽돌 제조 연료 전환,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AMS-III.Z)

방법론 개요

- 방법론 주요사항(사업유형,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유형)
- 방법론 적용조건
- 사업경계(베이스라인, 사업 활동)

감축 메커니즘

- 베이스라인 배출량(산정식, 인자 설명)
- 사업 배출량(산정식, 인자 설명)

03 부록 - 우리나라 정부부처 지원사업 현황

우리나라 “정부부처의 국제감축 지원사업 현황” 정리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국제감축 지원사업 추진 예정”

Annex V

정부부처 국제감축 지원사업 현황

정부부처	운영기관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 2024년 국제감축 지원사업 추진 예정 -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사업지원실 - 연락처 : 02-3406-1058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 공고: https://www.koreaxim.go.kr/HP/HKB039M01 - 담당부서 : 한국수출입은행 ESG 경영부 국제감축사업반 - 연락처 : 02-6255-5126, 513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공고: https://www.energy.or.kr/front/board/list.do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국제협력실 - 연락처 : 052-920-0590, 05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공고: https://www.kotra.or.kr/sublist/1000022001 - 담당부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온실가스국제감축팀 - 연락처 : 02-3460-7495, 3227, 7492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공고: https://www.keco.or.kr/web/lay1/bbs/511310C108/A/18/list.do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상쇄제도운영부 - 연락처 : 032-590-5622, 56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공고: https://www.keitl.re.kr/site/keitl/ex/board/List.do?cbldc=277 - 담당부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연락처 : 02-2284-1756, 1778, 1766

154

정부부처	운영기관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국제감축 지원사업 추진 예정 ·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본부 글로벌사업지원실 · 연락처 : 02-3406-1058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확인 URL(부록 확인) · 담당부서 : ESG경영부 국제감축사업반 · 연락처 : 02-6255-5126, 513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확인 URL(부록 확인) · 담당부서 : 기후국제협력실 · 연락처 : 052-920-0590, 05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확인 URL(부록 확인) · 담당부서 : 온실가스국제감축팀 · 연락처 : 02-3460-7495, 3227, 7492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확인 URL(부록 확인) · 담당부서 : 배출권관리처 상쇄제도운영부 · 연락처 : 032-590-5622, 56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확인 URL(부록 확인) · 담당부서 : 해외사업실 · 연락처 : 02-2284-1756, 1778, 1766

Q&A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